

(497)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
김인제 위원입니다.

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“기여”를 “이바지”로 하고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번만”으로 하며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하는 등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